

3. 학사에 관한 시행세칙

가. 재입학 시행세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학칙 제18조에 의한 재입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 및 자격) ① 본 대학교 학칙에 의하여 제적된 자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입학정원의 결원이 있을 때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2010.1.15. 수정)

1. 학칙 제25조 제4호, 5호에 의하여 제적처분을 받은 자.
2. 학칙 제52조에 의하여 퇴학처분을 받은 자

제3조(허가 및 절차) ① 재입학의 허가는 1회에 한한다.

② 재입학을 원하는 학생은 소속 학부(과)장의 추천을 거쳐, 소정의 원서와 이유서, 성적 증명서, 학적부 앞면 증명서, 건강진단서 및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019.4.24. 개정)(2020.4.21.) (2022.4.22. 개정)

③ 재입학 허가자의 1년 평점 평균은 직전 학기 성적과 통산하여 산출한다.

제4조(등록) 재입학 허가자는 등록금 이외에 재입학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세칙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세칙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세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세칙은 2020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나. 재수강 시행세칙

제1조(목적) 이 시행세칙은 재수강제도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수강 과목의 조건) ① 재수강할 수 있는 과목의 조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본적으로 교과 내용, 교과 번호 및 교과목명이 동일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교과목명 및 교과 내용이 동일한 경우, 학점 수가 같거나 상향된 경우만 재수강처리가 가능하다.
3. 교과 내용은 동일하나 교과 번호 또는 교과목명만 일부 변경된 경우에는 교양학부장 또는 개설 학부(과)장의 지정 및 교무입학처장의 승인을 얻어 재수강 처리된다. 그러나 폐강된 과목이나 교과목명은 동일하나 교과내용, 교과번호, 교과구분이 다른 교과목은 재수강할 수 없다. (2019.2.8. 직제개편) (2019.4.24. 개정) (2020.4.21. 개정) (2022.4.22. 개정)
4. 재수강은 C+ 이하의 과목만 가능하다. (2015.1.23. 신설)

② 폐강된 과목의 재수강은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에 준하여 전공과목은 개설 학부(과)

장, 교양과목은 교양학부장으로부터 재수강과목을 지정을 받아 교무입학처에 제출한다. 다만, 교과과정 개편으로 현재 개설되어 있지 않은 완전 폐강된 과목과 교과목명은 동일하나 교과내용, 교과번호, 및 교과구분이 상이한 과목은 재수강 지정 및 처리가 되지 않는다. (2019.2.8. 직제개편) (2019.4.24. 개정) (2020.4.21. 개정) (2022.4.22. 개정)

제3조(성적증명서) 동일 교과목을 2회 이상 수강하여 성적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그 중 양호한 성적 하나만 인정하며, 인정된 학점에 성적증명서와 학적부상에 재수강 된 과목임을 나타내는 “R”(Repeated Course) 표시를 한다. 다만, 재수강하여 동일한 성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이전 취득 학점에 “R” 표시를 한다.

제4조(대상학점) 모든 교과목은 재수강이 가능하다.

제5조(경고 사항) 해당 학기에 받은 성적(재수강 처리 전)에 대한 경고 사항은 유효하다.

제6조(재수강 이수 성적 제한) 재수강하는 과목은 B+ 이하의 성적만 취득이 가능하다.

(2015.1.23. 신설)

부 칙

① (시행일) 이 세칙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세칙은 2015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세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세칙은 2020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 학사편입학 시행세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학칙 제16조와 학사 내규 제54조에 의한 학사편입학생의 학사운영과 학점인정에 따른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여 편입학생 관리를 원활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세칙은 대학을 졸업하고 본 대학교 3학년 학사편입 학생을 적용대상으로 한다. (2021.4.22. 개정)

제3조(자격) 4년제 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이어야 한다.

제4조(학사편입 전공 범위) 전공에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다.

제5조(방법) 지원자에 대해서는 전적대학에서 이수하거나 관련 법령에 의하여 취득한 성적, 면접고사 성적 등을 고려하여 선발하며 세부사항은 편입학 모집 요강에 의한다. (2019.2.8. 개정)

제6조(이수학점) 학사편입학자는 대학에서 정한 졸업에 필요한 학점 이상을 다음 각호에 따라 취득하여야 한다.

1. 해당 학부(과)에서 지정한 소정의 전공과목 이수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2019.4.24. 개정) (2022.4.22. 개정)

2. 해당 학부(과)의 결정에 따라 기초과목을 지정하여 이수시킬 수 있다. (2019.4.24. 개정) (2022.4.22. 개정)

3. 학사편입학생은 교양과목의 이수를 면제한다. 단, 학사 내규 제45조에 따라 미사를 2학

기 이상, 사회봉사를 1학기 이상을 이수하여야 하고, 건학이념 관련 교과목 1개 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2023.2.7. 단서조항 추가)

4. 학사편입생은 65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2008.3.1. 수정) (2022.2.8. 개정)

제7조(등록) 최소 4학기 이상을 등록하여야 하며, 6학기를 초과 등록할 수 없다

제8조(미사) <삭제. 2023.2.7.>

제9조(사회봉사) <삭제. 2023.2.7.>

제10조(학칙의 준용) 이 세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대학교 학칙 및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세칙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세칙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세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세칙은 2019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세칙은 2021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세칙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세칙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세칙은 2023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라. 일반편입학 시행세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학칙 제15조와 학사 내규 제54조에 의한 일반 편입학생의 학사운영과 학점인정에 따른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여 편입생의 관리를 원활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세칙은 2학년 및 3학년 일반 편입학생을 적용대상으로 한다.

제3조(학점인정 및 절차) ① 편입생의 학점은 65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2008.3.1. 수정) (2017.12.15. 수정) (2023.2.7. 개정) (2023.11.14. 개정)

② 학점인정 절차는 교무입학처에 비치된 “전공과목 인정표”에 본 대학교 교과목으로 인정받아 성적표 원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019.2.8. 직제개편) (2023.2.7. 개정)

③ 전공과목(학점)의 인정은 학부(학과) 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2019.2.8. 직제개편) (2019.4.24. 개정) (2020.4.21. 개정) (2022.4.22. 개정) (2023.2.7. 개정) (2023.11.14. 개정)

④ 전적 대학 이수 과목(학점) 중 본 대학교의 전공으로 대체 인정받지 못한 과목의 학점은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 범위 내에서 해당 학부(과)장의 승인을 받아 일반선택으로 인정한다. (2019.4.24. 개정) (2022.4.22. 개정) (2023.2.7. 개정)

⑤ 학점인정 시 전적 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의 학점이 본 대학교에서 개설된 교과목의 학점과 같거나 4분의 3 이상일 경우에만 대체 인정할 수 있다.

⑥ 전적 대학의 성적이 "C" (본 대학교 기준) 미만인 성적은 인정할 수 없다.

⑦ 일반편입학 편입생은 교양과목의 이수를 면제한다. 단, 학칙 제39조 제3항에 따라 미사를 2학기 이상, 사회봉사를 1학기 이상을 이수하여야 하고, 건학이념 관련 교과목 1개 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2019.4.24. 개정) (2020.4.21. 개정) (2022.4.22. 개정) (2023.2.7. 개정) (2023.11.14. 개정)

제4조(학사운영) ① 편입생은 조기 졸업을 할 수 없다. (2023.6.21. 개정)

② 편입생의 전적대학에서의 부전공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5조(미사) <삭제. 2023.2.7.>

제6조(사회봉사) <삭제. 2023.2.7.>

제7조(이수 학기) 일반 편입학생 중 3학기 편입학생은 9학기, 4학기 편입생은 7학기, 5학기 편입생은 6학기를 초과등록 할 수 없다.

제8조(학칙의 준용) 이 세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대학교 학칙 및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세칙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세칙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세칙은 201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세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세칙은 2019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세칙은 2020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세칙은 2023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② (학점인정에 관한 적용례) 제3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제8항의 개정세칙은 2023학년도 일반편입학 편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세칙은 2023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세칙은 2023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마. 졸업논문 시행세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학칙 제41조에 의한 졸업시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정한다. (2023.11.14. 개정)

제2조(구분) <삭제, 2022.4.22.>

제3조(정의) 졸업시험이라 함은 답안지를 통하여 실력을 시험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응시자격) 졸업시험 응시자격은 졸업요건을 갖춘 최종학기에 재학중인 자로 한다. (2022.4.22. 개정)

제5조(시험) 졸업시험은 최종학기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2022.4.22. 개정)

제6조(졸업시험 실시 기준) ① 해당 학부(과)에서는 시험 실시일 2개월 전에 시험일시 및 장소, 시험과목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2019.2.8. 직제개편) (2022.4.22. 개정)

② 출제과목은 해당 전공 교과과정에 의한 3과목 이상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출제형태는 해당 학부(과)에서 회의를 거쳐 결정한다. (2022.4.22. 개정)

제7조(평가) 시험 성적의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경우 P(통과)로 하며, 한 과목이라도 40점 미만인 경우에는 NP(부적격)로 사정한다. (2022.4.22. 개정)

제8조(학적부 등재) 성적기록부에 평가의 등급 및 P(통과) 또는 NP(부적격)를 기록한다.

제9조(부정행위자의 처리) 부정행위자에 대하여는 NP(부적격)로 사정하고 P(통과)로 사정한 이후라도 이를 NP(부적격)로 변경할 수 있다.

제10조(규정준용) 수업연한이 단축 또는 지연되는 경우에 대하여는 본 규정을 준용하여 교무입학처장이 따로 정한다. (2019.2.8. 직제개편)

부 칙

① (시행일) 이 세칙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세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세칙은 2020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세칙은 2023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바. 등록제도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제1조 (목적) 이 시행세칙은 학칙 제8장에 따라 등록금의 납부 및 반환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여 등록금을 합리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등록금의 책정) 등록금은 교육원가, 물가수준, 전학년도 등록금 등을 고려하여 학기별로 책정한다.

제3조 (등록 기간) ① 등록금은 매 학기 시작 전 10일 이내의 일정 기간을 정하여 수납한다. 다만, 신입생은 입학 전 60일 이내의 일정 기간을 정하여 수납할 수 있다.

제4조 (등록 고지) 등록 기간은 공식적으로 게시하고 개인별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 (분납제) ① 분납을 원하는 학생은 정해진 기간에 소정의 분납 신청서를 담당 부서에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2013.4.22.부서 변경)

② 분납을 승인받은 학생은 정해진 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하며, 2차 및 3차 분납등록금을 정해진 기간에 납부하지 아니한 학생은 학칙 제 25조에 의거 미등록제적 처리된다. (2013.4.22. 자구수정, 항목추가)

③ 1차 분납금은 학기 개시일 이전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하지 않은 경우 분할납부신청은 자동 취소되어 일괄납부대상자로 분류한다. (2013.4.22. 내용수정)

④ 분할 납부를 신청한 학생이 학기 개시일 이후 부득이하게 휴학하여야 하는 경우 납부한 금액은 제7조에 정한대로 반환되고 미등록휴학으로 처리한다. (2013.4.22.항 신설)

⑤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분납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2013.4.22.항 신설)

1. 신(편)입생, 재입학생
2. 휴학생
3. 등록금 고지액 중 학비감면 및 교내외 장학금 수혜 합계액이 1,000,000원 초과인 학생
4. 1차분의 분할 납부 금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학생
5. 이전 분할 납부 학생 중 금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학생
6. 학기초과학생
7. 학자금 대출 신청 학생

제6조 (학기초과자의 등록금) ① 학기초과자는 다음과 같이 신청학점에 따라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2008.3.1. 개정)

1. 1학점부터 3학점까지는 당해 학기 수업료의 6분의 1 해당액을 납부한다.
2. 4학점부터 6학점까지는 당해 학기 수업료의 3분의 1 해당액을 납부한다.
3. 7학점부터 9학점까지는 당해 학기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을 납부한다.
4. 10학점 이상은 당해 학기 수업료의 전액
5. 0학점 신청자(Pass/Non Pass 과목 수강자)인 경우에는 별도로 정한다.

② 학기초과자는 수강신청과목 확정 후, 학적과에서 별도의 등록금고지서를 받아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2008.3.1.부서 변경)

제7조 (휴학자의 등록금 대체 및 반환) ① 등록금을 납부한 후 일반휴학 할 경우, 등록금 대체를 원칙으로 하며 대체금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2008.3.1. 자구수정)

1. 학기 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휴학한 경우, 등록금의 5/6를 대체한다. (2013.4.22. 내용수정)
2.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날부터 60일 이내에 휴학하는 경우, 등록금의 2/3를 대체한다. (2013.4.22. 내용수정)
3.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날부터 90일 이내에 휴학하는 경우, 등록금의 1/2을 대체한다. (2013.4.22. 내용수정)
4.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경우, 등록금을 대체하지 아니한다. (2013.4.22. 내용수정)

② 등록을 마친 후 수업일수 2/3 해당일 전에 입대 휴학을 신청한 학생 및 임신·출산·육아 휴학을 신청한 학생은 제대 후 복학하는 첫 학기의 등록금 전액을 대체한다.

③ <삭제> (2008.3.1)

④ 분납이나 분납연기를 신청하고 1차 분납금만 납부한 학생이 휴학하거나 자원 퇴학하는 경우 등록금반환은 제1항과 같으며, 공제 후 1차 분납금이 반환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부족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⑤ 장학금 수혜자가 휴학할 경우, 장학금 수혜가 취소된다. (2008.3.1. 개정)

제8조 (시간제등록생의 등록금) 시간제등록생의 납입금은 입학금을 제외한 전일제 학생의 학기당 납입금 총액을 전일제 학생의 매학기 수강신청 기준학점(18학점)으로 나눈 금액에 신청학점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2009.3.1. 신설) (2009.8.1. 단서조항추가)

부 칙

- ① (시행일) 이 세칙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규정) 이 규정 이전에 시행된 것은 이 규정에 의거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세칙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세칙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세칙은 200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세칙은 2013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사. 해외장기인턴십에 관한 시행세칙(2009.8.1. 신설)

제1조(목적) 이 시행세칙은 해외장기인턴십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점인정 범위) 본교에서 주관하는 해외장기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일정 기간 동안 인턴십을 이수한 학생은 실습 시수에 따라 12학점 이내에서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

제3조(절차 및 자격) ① 학점인정은 재학 기간 중 1회에 한하며, 해당 학기는 반드시 본교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해외장기인턴십을 희망하는 학생은 소정 기간에 신청서를 소속 학부(과)장을 경유 교무입학처에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019.2.8. 직제개편) (2019.4.24. 개정) (2020.4.21. 개정) (2023.2.7. 개정)

③ 졸업 학기에는 해외장기인턴십 이수를 허가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모두 취득한 경우에는 졸업 학기에도 이수할 수 있다.

제4조(성적처리) ① 인턴십 학점은 해당 학생이 해당 기관에 평가서 등을 첨부한 소정의 신청서를 소속 학부(과)장에게 제출하여 평가를 받은 후 교무입학처장에게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019.2.8. 직제개편) (2019.4.24. 개정) (2020.4.21. 개정) (2022.4.22. 개정)

② 해외장기인턴십의 평가는 학생의 보고서와 해당 기관의 평가서를 통해 P(pass) 또는 F(fail)로 평가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세칙은 200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세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세칙은 2019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세칙은 2020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세칙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아. 방송·통신 등의 온라인 교과목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2017.12.15. 신설)

제1조(목적) ① 학칙 제6조의 세부 사항을 정하기 위함이다. (2023.11.14. 개정)

② 이 규정은 정규 교과과정으로 개설된 방송·통신 등의 온라인 교과목(이하 온라인 교과목)강의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교육과정의 다양성을 증진하여 학생들의 학습 선택권을 높이고 학습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하여 온라인 교과목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온라인 교과목은 정보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온라인 공간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강의를 말한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강좌가 혼합된 블렌디드 교과목도 이에 해당한다. (2023.11.14. 개정)

② 온라인 교과목 콘텐츠는 문자, 이미지, 음성, 동영상, 애니메이션 등을 활용한 수업용 멀티미디어 저작물을 말한다.

제3조(온라인 교과목의 구성) ① 온라인 교과목의 수업일수는 오리엔테이션, 중간시험, 기말시험을 포함하여 학기당 15주 이상으로 하고 오리엔테이션, 중간시험, 기말시험은 오프라인 진행을 원칙으로 한다.

② 온라인 수업의 1학점당 이수시간은 학습 내용 동영상 콘텐츠, 학습정리, 토론, 팀 프로젝트, 연습문제 등의 수업 관련 활동을 모두 포함하며, 이 중 학습 내용 동영상 콘텐츠는 매 차시 25분 이상을 확보하고, 강의 담당 교수가 직접 개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블렌디드 교과목의 경우 오프라인 수업은 8주 이상 제공되어야 한다. 단, 블렌디드 교과목 중 8주 이상의 온라인 수업이 필요한 경우 교육과정운영위원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2023.2.7. 단서 조항 추가)

③ 동일한 학습 내용 동영상 콘텐츠는 3년마다 교육과정운영위원회의 심사를 통하여 재사용 여부를 결정한다.

제4조(MOOC의 학점인증) MOOC 수강생에게는 소정의 절차를 걸쳐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학생이 타 대학의 MOOC를 수강하여 학점인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1. MOOC 수강을 원하는 학생은 강좌 개설 요청 신청서를 교무입학처에 제출해야 한다. (2019.2.8. 직제개정)

2. 신청된 MOOC 강좌의 내용 등에 대한 판단은 교양학부 및 학부(과)에서 실시하며 이

를 바탕으로 교육과정운영위원회에서 최종 승인한다. 단, 본교에 개설된 교과목과 그 내용이 유사한 교과목은 신청할 수 없다. (2019.4.24. 개정) (2020.4.21. 개정) (2020.4.22. 개정)

3. MOOC 수강 후 받은 인증서(Certificate)와 학점인증 신청서를 교육과정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4. MOOC 수강 후 받은 인증서(Certificate)는 이수 일자를 기준으로 하며, 이수 후 1년 이내에 제출한 이수증에 한해서 인정한다.
5. 이수증의 제출은 1년에 2회[3월(전년도 9월 ~2월 이수), 9월(3월~8월 이수)]로 제한하며 기간 내에 제출한 이수증에 한하여 인정한다.

② MOOC 학점의 제한은 아래와 같다. (2023.11.14. 개정)

1. 타 대학 MOOC 강좌의 경우 MOOC에 명시된 학점을 인정하되 P 또는 NP로 평가하며, 평점 평균에 반영하지 아니한다.
2. 타 대학 MOOC는 학기당 3학점, 졸업까지 최대 6학점 내에서 인정한다. 단, 최종학기 재학생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3. 타 대학 MOOC는 K-MOOC로 한정한다.
4. 재학 중 이수 및 제출한 이수증에 한해서만 인정하며, 휴학 중 이수한 강의는 인정하지 않는다.

제5조(학술교류 대학교 온라인 교과목수업) 우리 대학교와 학술교류 협정을 체결한 대학교에서 실시하는 온라인 수업(계절학기 수업 포함)의 교과목에 대하여는 학점을 모두 인정하며, 관련 절차 등은 학술교류 내용 및 운영 규정 등에 따른다.

제6조(온라인 교과목 개설) ① 온라인으로 개발할 교과목은 신청을 받아 교육과정운영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선정한다.

② 온라인으로 개발할 교과목은 해당 교과목의 수강수요, 운영계획서의 질적 수준 및 신뢰성, 온라인 교과목 적합성, 교수역량(경험, 지식, 추진 의지 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인한다.

③ 온라인 교과목 개발은 기존 교과과정에 포함된 교과목을 대상으로 하며, 신규 교과목일 경우에는 교과과정을 신규 개설한 후 개발하여야 한다.

④ 온라인 교과목 개발 및 개설은 전임교원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온라인 교과목 개발 지원) ① 개발 승인된 온라인 교과목은 교수학습지원센터에서 콘텐츠 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온라인 교과목 콘텐츠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콘텐츠 개발 신청 및 심사를 통하여 콘텐츠 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온라인 교과목 학사운영) ① 수강신청은 오프라인 교과목의 수강신청과 동일한 절차를 따른다.

② 온라인 교과목 개설은 강의 개발 교수가 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팀티칭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③ 온라인 교과목은 매 학기 개설할 수 있으며, 한 학기에 교수 1인당 1강좌(주말 수업 제외) 온라인 교과목을 담당할 수 있다. (2023.11.14. 개정)

④ 학생이 온라인 교과목 이수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은 학기당 2강좌,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100분의 20 이내(주말 수업 제외)를 원칙으로 한다. (2023.11.14. 개정)

⑤ 수강인원, 분반, 폐강기준은 오프라인 교과목에 준하여 적용한다. 단, MOOC 강좌는 예외로 적용한다.

⑥ 학점인정, 재수강, 성적평가는 오프라인 교과목의 방식과 동일하게 적용하되 강사료 지급기준은 따로 정한다. (2023.4.20. 개정)

⑦ 제3항, 제4항에도 불구하고 교과 운영상 필요한 경우 교육과정위원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2023.2.7. 신설)

제9조(온라인 교과목 저작권) ① 이 규정에 따라 제작된 강의 콘텐츠의 지식재산 소유권은 개발 교수에 귀속하나 사용권은 본교와 공동으로 갖는다.

② 개발된 강의 콘텐츠를 본교 수업의 일환으로 다른 교수자가 이용할 경우 또는 개발한 교수가 본교 수업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본교와 개발 교수간 상호 승인 후 사용하여야 한다.

③ 강의 콘텐츠 제작 시 저작권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자료의 무단 복사나 활용은 허용하지 아니하며, 저작권 관련 문제 발생 시 책임은 개발 교수에게 있다.

제10조(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학칙 및 규정에 따른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세칙은 2017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세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세칙은 2019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세칙은 2020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세칙은 2023학년도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세칙은 2023학년도부터 적용한다.

아-1. 한국 가톨릭 교양 공유대학 교과목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2023.2.7. 신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칙 제27조 3항 한국 가톨릭계 대학교에서 설립한 <한국 가톨릭 교양 공유대학(이하 “교양 공유대학”라 한다)> 교과목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과목 편성 및 개설) 교양 공유대학에 편성된 교과목을 동일하게 교과과정에 편성한다.

② 교양 공유대학 과목은 전임 및 강사를 포함한 비전임 교원 모두 개설할 수 있다.

③ 과목개설을 희망하는 교원은 매년 4월과 11월 과목개설신청서와 수업계획서를 교양학부에 제출하고 교양교육과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교양 공유대학에 추천한다.

제3조(강의형태) ① 교양 공유대학 교과목은 동시적 원격수업을 원칙으로 하되, 동시/비동시 혼합형 원격수업 형태로도 운영할 수 있다.

② 동시/비동시 혼합형 원격수업을 운영할 경우에도 5주 수업 이상은 동시적 원격수업을

진행해야 한다. 단, 교과 운영상 불가피한 경우 개설 교과목 중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교양 공유대학 교양교육과정위원장의 승인에 따라 예외를 둘 수 있다.

제4조(학점당 이수시간) 50분 수업기준으로 15주 수업을 1학점으로 인정한다.

제5조(성적평가) ① 교양 공유대학 교과목의 성적평가는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② 매 학기 중간시험, 학기말 시험, 과제, 실기·실습 보고서, 개인 연구 보고서, 출결 상태와 평소의 수업 참여도 등에 의하여 평가하며, 출결 상태는 평가에 반드시 반영하여야 한다.

③ 성적평가는 100점 만점으로 입력한다.

④ 100점 만점으로 평가된 본교생의 성적은 교양교육과정위원회에서 확정한다.

⑤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당해 교과목을 낙제 처리할 수 있다.

제6조(성적 확인 및 정정) ① 학생은 성적에 이의가 있을 경우 교과목 담당 교수에게 기간 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교과목 담당 교수는 학생의 이의 신청에 대하여 분명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성적을 정정할 수 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세칙은 2023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자. 학점이월제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2019.12.18. 신설)

제1조(목적) 이 세칙은 「학칙」 제30조에 따라 학점이월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학점이월”이란 매 학기 최대 취득학점과 수강신청 학점의 차이가 3학점 이하일 경우 미신청 학점을 다음 학기로 이월하여 신청함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학점이월의 적용은 해당 학기 최대 취득학점을 모두 신청하지 못한 학생의 경우 다음 학기에 한하여 미신청 학점을 이월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제4조(운영기준) ① 학점이월은 직전 학기 미신청 학점이 3학점 이하일 때 허용한다.

② 휴학생의 학점이월 기준은 휴학 직전 학기로 하며, 8학기 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교류 학생(교환·학점교류 등)의 학점이월기준은 파견 직전 학기로 한다.

④ 학점 재이월은 불허한다.

제5조(학점이월의 제한)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학점이월을 제한한다.

1. 직전 학기 성적이 4.0 이상인 자
2. 직전 학기 학사경고를 받은 자
3. 직전 학기 수강신청취소 과목이 있는 자

부 칙

① (시행일) 이 세칙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차. 캡스톤디자인 교과목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학칙 제26조에 따라 개설한 가톨릭꽃동네대학교 캡스톤디자인

(Capstone Design, 창의적 종합설계) 교과목의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캡스톤디자인”이란 전공과 관련된 문제를 다양한 전공지식을 활용하여 팀을 이루어 해결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교과목을 의미한다.
2. “캡스톤디자인 팀”이란 2인 이상의 교과목 수강자가 한 팀이 되어 팀 프로젝트 형식으로 운영하는 형태를 말한다.

제3조(교과과정) 대학의 교과과정에서 정한 각 학부(과) 전공교과목으로 운영한다. (2022.4.22. 개정)

제4조(교과목 운영) ① 캡스톤디자인 교과목은 학생 2인 이상의 팀 단위의 형태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교과목의 이수 희망자는 수강신청을 마친 후에 팀별 캡스톤디자인 신청서 및 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은 후 수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집행계획서를 작성한다.

③ 교과목 이수자는 중간보고서 작성 등 팀별 활동에 대한 지도교수의 검토 및 관리를 받아야 한다.

④ 캡스톤디자인 결과물은 제안서, 포트폴리오, UCC, 포스터, 제품, 설계작품, 실험성과, 분석결과 등의 유·무형적 결과여야 한다.

제5조(교과목 평가) 캡스톤디자인 교과목의 평가는 교과목 담당 교수의 평가를 통해 이루어지며, 학부(과)에 따라 소속 교수의 공개적인 평가 과정을 거칠 수 있다. (2022.4.22. 개정)

제6조(적용 범위) 이 세칙은 별도의 지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교 학생의 모든 캡스톤디자인 교과목에 적용한다.

제7조(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학칙 및 규정에 따른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세칙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세칙은 2021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카. 독서인증제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2020.12.16 신설)

제1조(목적) 이 세칙은 학칙 제45조3항의 독서인증제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대상) 독서인증제는 2021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2023.11.14. 개정)

제3조(독서인증제 주요사항 심의) 독서인증제 실시에 관한 주요사항은 교육과정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제4조(인증 기준) ① 졸업 인증 기준은 도서 20권 이상으로 한다. 다만, 교육과정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비교과 활동을 도서로 대체할 수 있다. (2023.11.14. 개정)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의 졸업인증기준은 아래와 같다. (2023.2.7. 개정)

1. 학사편입생은 면제한다.
2. 일반 편입생은 면제한다.
3. 학칙 제39조에 따라 학점인정을 받은 신입생은 면제한다.

제5조(인증기한) 독서인증제 적용 대상자는 졸업 최종학기까지 인증을 받아야 한다.

제6조(졸업인증 절차 및 인증표기) ① 졸업인증기준을 충족한 학생은 졸업인증신청서와 관련된 서류를 첨부하여 졸업 학기 학기말 시험 개시 전까지 소속 학부(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2022.4.22. 개정)

② 인증표기는 “P” (급) 또는 “NP” (낙)으로 표기하되, 학점인정 및 평점 평균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7조(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학칙 및 규정에 따른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세칙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세칙은 2023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는 2023학년도 신·편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세칙은 2023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